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44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박민규 · 정태호 · 민병덕  
윤준병 · 이주희 · 김남희  
박정현 · 김동아 · 손 솔  
이정문 · 민형배 · 이춘석  
김용만 · 조승래 · 이재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2년 이내의 범위”를 “2년 이내의 범위(단, 제8호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에”를 각각 “제1항 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위반행위 종료일”을 “위반행위 종료일(제8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 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

격이 제한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
4. 영업자가 폐업 후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이들 중의 한 명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 시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수인 등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할 때에는 종전의 자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 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
4. 영업자가 폐업 후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이들 중의 한 명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 시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수인 등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할 때에는 종전의 자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